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10. 11 선고 2024가단35698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9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진주시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건물의 1층 82.7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가, 나, 아, 자, 가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39.79㎡ 부분을 명도하고, 2023. 6. 24.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강효인

별지